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0월 16일

국 무 총 리 이 낙 언

국 무 위 원 박 상 기

법무부장관

●법률 제1579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50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1천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대하여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 대하여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